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 건 번 호 제2022-007-042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2. 4. 27.

주 문

-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이용자 상담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등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를 제공하는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8. 5. 법률 제16955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명)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1)는

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침해신고(2019.9.24.)가 접수됨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2020. 11. 10. ~ 2021. 5. 31.)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를 제공하면서 '20. 11. 20. 기준 건의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개인정보 수집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건)
회원정보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일 시		피심인의 유출인지 및 대응 내용
2019. 8. 28.	16:30	피심인의 Q&A게시판에 민원 제기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지
	17:18	시스템 개선 완료

^{1) 2020. 8. 5.} 시행된 개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제1항), 법 시행 전 방송통신 위원회가 행한 고시·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제4항)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탑승권 정보 2건*

* 이름, 편명, 좌석번호, 출발지, 도착지, 항공권번호, 회원번호 등

(유출경위) 시스템 업데이트* 시 직원의 인지할 수 없는 실수로 업데이트 직전 월렛 모바일 탑승권을 최종 조회한 이용자 2명의 탑승권 정보가 다른 이용자 106명에게 조회됨

* 월렛 관련 2대의 WAS서버를 업데이트 하면서, 월렛용 모바일탑승권 파일(pass. json)이 쓰기 권한 없이 업로드 됨

3.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019. 8. 28.에 이용자의 문의를 접수받아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유출 신고 및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6. 2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7. 9.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 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제4호)',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27조의3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위반행위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개인정보 유출신고 ·통지 위반	정보통신망법 §27조의3①	§14조의2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 미실시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이용자 상담 등을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1항 제2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2018. 7. 4.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한다.

< 「정보통신망법」시행령 [별표9] 2. 개별기준 >

(단위:만원)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하.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경우	법 제76조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따라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경우로 기준금액의 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정)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사업규모·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위치정보처리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 감경을 거쳐 총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행위(세부내용)	기준금액	가중액	감경액	최종 과태료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1,000만 원			

V.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1항 제2호의3,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2년 4월 27일

- 위원장 윤종인 (서명)
- 부위원장 최 영 진 (서 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홍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